

범민련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감청 및 민간인 사찰 실태 보고 1

1. 사건 개요

1. 단체 소개

-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은 남북해외 3자 실무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1990년 11월20일에 국내외에 결성을 선포
-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 연합체인 범민련은 현재 남, 북, 해외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으며 분단이후 최초의 3자연대 기구이며 90년대 이후 가장 대표적인 통일운동단체

2. 사건 개요

- 2009년 5월7일(목) 오전 6시30분경,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약 10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한 대규모 합동작전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및 간부들 자택 총 26곳에 대해 압수·수색 전격 실시, 이 과정에서 6명 강제연행
- 이규재(73세,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경원(43세,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은아(37세, 범민련 남측본부 선전위원장) 3명은 현재 1심 재판 진행중
- 청주지역 3명은 9월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항소심 진행중
- 구속기소된 6명 이외 최동진(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을 포함한 8명 불구속 조사 진행
- 지난 10월31일(토), 제주지역 제주통일청년회 사무실과 전 회장 자택 전격 압수·수색,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기관의 탄압이 계속 되고 있는 중

3. 대상자 이경원(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약력

- 1966년 출생으로 85년 한양대(안산) 금속재료공학과 입학이후 학생운동을 전개하

고 94년 ‘안산민주청년회’를 결성, 회장을 역임하다 ‘경기남부범민족대회추진본부’ 본부장(95년,96년), ‘청년연석회의’ 경기남부지역대표(99년), ‘범민련남측본부 경기남부지역연합’ 결성을 주도 의장에 선출(00년), ‘범민련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사무국장(01년),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역임(03년), 현재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

II. 대상자 이경원에 대한 감청 및 사찰 실태

1. 국정원에서 말하는 메일 수색 및 감청 사유

- 대상자 이경원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서 북한의 대남전략과 그 투쟁노선에 따라 국내 재야단체들의 활동을 배호조종하면서 친북통일 투쟁의 전위대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을 지속중인 것으로 확인되어...¹⁾
- 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법행위가 매우 은밀하여 통상적인 내·수사 활동으로는 국가보안법상 통신연락 혐의에 대한 범증수집에 편중...²⁾
- 간첩활동 등 핵심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증수집이 곤란한 상황이고...³⁾

2. 이메일 압수·수색 현황

- 2004년 12월10일, 첫 이메일 압수·수색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총 9회, 약 6년에 걸쳐 이메일 압수·수색(별첨1 참고)
-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분량이나 기간의 제한없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이 철저히 침해
-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가족(이경원의 처)의 이메일 압수·수색까지 진행⁴⁾,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들의 사생활까지 감시

1)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영장번호8631-2004.12.20)

2) 통신제한조치허가서(허가서번호5239-2004.7.27)

3) 통신제한조치허가서(허가서번호5239-2004.7.27)

4) 대상자의 처 이메일 계정 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의 사유로 범민련남측본부 조직원들이 가족 명의의 이메일을 조직활동에 사용중인 정황이 포착되었는 바 대상자도 가족 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활동에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설명 -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9451-2009.4.17)

3.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감청 현황

- 대상자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2003년에 최초 통신제한조치허가서(2003.7.30)가 발부된 이후 총37회에 걸쳐 무려 7년 동안⁵⁾ 단 하루도 빠지 않고 대상자의 통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과 사생활을 감청(별첨2 참고)
- 특히, 허가번호8287 통신제한조치허가서(2004.11.30) 발부 이후 허가번호 8287-1~14 허가서(2007.5.30) 발부까지 무려 14회까지 기간을 연장해 이경원 사무처장의 전자우편과 인터넷 등을 실시간 감청. 30개월에 걸친 무차별적인 감청
- 2003년 7월30일 이후 2009년 5월7일 구속될까지 단 하루도 빠지 않고 감청한 것은 최초 허가서(허가번호2741)에 기간 연장이 총3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4. 통신제한조치 대상과 범위

1) 전기통신의 감청

- 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설치 유선전화, 팩스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착·발신 지 통화내역(역추적 포함)
- ②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설치 KT메가패스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IP로그기록) 추적 (인터넷 패킷감청)
- ③ 대상자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착·발신 통화내역(역추적 및 국제로밍·국제통화내역 포함) 및 실시간 기지국 사용 현황(위치추적)
- ④ 대상자 명의로 사용중인 E-mail계정에 대한 착·발신 전기통신 내용의 감청 및 출력·인도, 착·발신지 및 IP로그기록 추적,계정내 메일 보관함(착·발신 및 수신 확인정보)내 E-mail 내용 열람·출력

2) 우편물 검열

- 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 · 인도
- ② 대상자 주거지로 수·발신된 대상자 및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복사(사진촬영 포함) · 인도

3) 대화 녹음 및 청취

5) 통신제한조치허가서(허가서번호2741-2003.7.30) ~ 통신제한조치허가서(허가서번호3241-2009.6.22)

① 대상자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내용중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에 대한 녹음 및 청취

5. 인터넷 패킷감청

1) 문제점

-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신호를 제3자가 통째로 감청하는 방식
- 지난 8월31일, 인권단체들이 실천연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패킷감청 문제를 처음으로 알립⁶⁾
-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통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 대상자 이외 다른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까지 공안·수사기관에서 열어 볼 수 있음

2) 범민련 사례

- 적어도 2004년 7월30일⁷⁾이후부터 패킷감청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
-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위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설치된 (주)KT 인터넷 전용선(ID:bun615, 명의:사무차장 윤00)에 대한 감청 및 착·발신지 추적(IP추적 포함)] 추가
- 검찰도 스스로 정보·수사기관에서 패킷감청 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음⁸⁾
- 다만, 패킷감청을 통한 자료가 증거자료나 수사자료로 제출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
-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각 사업자 담당자 자필 사인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인터넷 패킷감청을 했다는 정황 드러남

6. 휴대전화 위치추적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가 발급되면 허가서에 적힌 사용기한동안, 통화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 10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기지국의 위치정보를 담당 수사관의 휴대폰 SMS로 발송함(사업자는 이러한

6) 한겨레21(2009.9.7) -16페이지 표지이야기 <국정원의 '패킷감청'>

7) 통신제한조치허가서(허가서번호5239-2004.7.30)

8) 검찰 의견서(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윤상호검사 작성-2009.10.14)

- 일부 감청허가서에 허가된 인터넷 회선 감청의 경우 기술적으로 변호인 주장과 같은 패킷감청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회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한 감청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수사대상자 외의 자가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이 지득·채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는 전화회선에 대한 감청의 경우와 다르지 않고 집행상 유의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본건의 경우 설사 인터넷 회선 감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허가요건, 집행절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합니다.

위치정보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발송 즉시 삭제한다고 함)⁹⁾

- 대상자 이경원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LG텔레콤사장에게 보낸 공문(제 수교 09-1호)¹⁰⁾ 내용 중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대상자 사용 휴대전화 010-7539-0000의 09.3.9~09.5.8간 실시간 기지국 사용 현황(위치추적) / *통보 : 016-628-4384¹¹⁾> 라고 명시

2) 최은아(범민련 남측본부 선전위원장)의 사례

○ 2009년 3월22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진보연대 제2기 출범식’ 참가사실 확인¹²⁾

- 법원으로부터 최은아의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기지국 사용현황(위치추적)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결정서를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

- 오전 08:31까지 거소지(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00-000)에 체류하다가(기지국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432 대방역)

- 09:01경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출발하여 09:31-11:01간 행사장소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1호선 ‘회룡역’지역에 머물렀다가(기지국 위치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35-1)

- 행사 시작 전인 11:31부터 행사 종료 후인 23:01까지 ‘출범식’행사장에 계속 체류한 사실이 확인(기지국 위치 :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146-15)

3) 이경원의 사례

○ 09.1~2월간 이경원이 자신 명의의 이메일을 직접 사용한 사실 확인¹³⁾

- 이경원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유중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09.1.1~2.28간 총 15회에 걸쳐 피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직접 조직활동 관련 문건을 수발신한 것으로 확인

-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결정서를 발부받아 집행하여

- 통신사로부터 입수한 피의자 명의 이메일 ID의 접속기록에 대한 IP추적을 통해 접속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후,

- ‘접속후 이메일을 사용하여 문건을 발신한 시간’과 함께 피의자 사용 핸드폰의 통화내역·위치추적 자료¹⁴⁾를 상호 비교·분석

9) 국회의원 변정일 방통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10.22)

10) 이경원 증거자료 13489쪽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11)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담당 수사관) 휴대전화번호

12) 최은아 증거자료 789쪽 - 국정원 작성(2009.3) 수사보고(피의자가 2009.3.22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진보연대 제2기 출범식’ 참가사실 확인)

13) 이경원 증거자료 11270쪽 - 국정원 작성(2009.3) 수사보고(09.1~2월간 이경원이 자신 명의의 이메일을 직접 사용한 사실 확인)

14) 이경원의 증거자료 11299쪽 - [휴대전화 위치추적(09.2.23~.9.4.22) 자료(문서번호:수2009-0219-294)]

7.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 대상자 및 그의 처 김00의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압수수색하여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으로부터 공작금 및 조직활동 자금 수수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를 위해¹⁵⁾
- 실제로 대상자와 그의 처 2000년 이후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일체를 압수수색

15) 이경원 증거자료 12102쪽 -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2008-3090 - 2008.5.8)